

의안번호	제494호
의결 연월일	2013년 6월 일 (제321회)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김형근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3년 6월 3일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4
----------	-----

발의연월일 : 2013년 6월 3일
발 의 자 : 김형근, 김희수, 심기보,
김봉희, 임 현, 정지숙,
하재성 의원

개정이유

-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을 일치시키고, 명칭의 정확화를 위하여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로 하며,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명시하고, 명칭의 정확화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명칭의 명확화(안 제2조)

- 도지사 →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충청북도 의회의원 → 충청북도의회 의원

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 신설(안 제3조 2항)

- 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도내 시·군 의회의원 및 시·군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다.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 일치(안 제8조)

- 감사관실 → 감사관

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변경

-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 기타 → 그 밖에
- 띄어쓰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나. 관련부서 협의 : 감사관 공직윤리팀과 협의함.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충청북도 의회의원”을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신설)

1. 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도내 시·군 의회의원 및 시·군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청북도 의회의원”을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을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으로 하며, “잔임기간”을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8조제6항에 따른”으로,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8조제1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행하게 하기 위하여”를 “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관실”을 “감사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u>도지사</u>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생략)</p> <p>2. 4명의 위원은 <u>충청북도 의회의 원</u> 증명과 의원공무원 증명으로 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p> <p>1.~2. (생략)</p> <p>③ <u>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u> 충청북도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p> <p>1. ~ 2. (생략)</p> <p>3. <u>기타</u>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p>	<p>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u>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4명의 위원은 <u>충청북도의회의 원</u> 2명과 소속공무원 2명으로 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제2호에 따라</u> 충청북도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p>

현행	개정안
<p>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차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p> <p>② <u>충청북도 의회의원</u>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u>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u>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p> <p>③ <u>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u>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u>잔임기간</u>으로 한다.</p>	<p><u>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u></p> <p><u>1. 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u></p> <p><u>2. 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u></p> <p><u>3. 도내 시·군 의회의원 및 시·군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u></p> <p>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한 차례만</u> 연임할 수 있다.</p> <p>② <u>충청북도의회 의원</u>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u>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p> <p>③ <u>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u>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u>남은기간</u>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략)</p> <p>② (생략)</p> <p>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인 출석요구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 위임</p> <p>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p> <p>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p> <p>4. (생략)</p> <p>③ (생략)</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p>	<p>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관계인 출석요구 및 법 제8조제11항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 위임</p> <p>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p> <p>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p> <p>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p>
<p>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p> <p>② 간사는 감사관실 공직윤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p>	<p>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p> <p>② 간사는 감사관 공직윤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p>

관계법령 발췌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9>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 임직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

자율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9>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감사관 [시행일 : 2012-03-30]

(제정) 1993-08-20 조례 제 02080호

(일부개정) 2007-10-05 조례 제 3029호

(일부개정) 2012-03-30 조례 제 34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등에 대한 심사·결정을 위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30]

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 10. 5, 2012. 3. 30>

1.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2. 4명의 위원은 **충청북도 의회의원** 2명과 소속공무원 2명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2. 3. 30>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7명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안전 심사·결정 및 승인
2. 충청북도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 심의

3.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2. 3. 30]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3. 3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12. 3. 30>]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충청북도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2012. 3. 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12. 3. 30>]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2012. 3. 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12. 3. 30>]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10. 5, 2012. 3. 30>

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인 출석요구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 위임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6조에서 이동<2012. 3. 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2. 3. 30>]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감사관실 공직윤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2. 3. 30>

[제7조에서 이동<2012. 3. 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2. 3. 30>]

제9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전문개정 2007. 10. 5]

[제8조에서 이동<2012. 3. 3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2. 3. 30>]

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충청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에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5]

[제9조에서 이동<2012. 3. 3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12. 3. 30>]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12. 3. 30>]